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08가단5666 손해배상(기)

원 고 장○○ (1939년 생)

피 고 1. 김○○ (1953년 생)

2. ○○생명보험 주식회사

변 론 총 결 2008. 12. 24.

판 결 선 고 2009. 1. 7.

주 문

- 피고 김○○는 원고에게 금 14,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6. 5.부터 2009. 1. 7.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김○○와 연대하여 제1항 기재 금원 중 금 4,38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6. 5.부터 2009. 1. 7.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김○○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7,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6. 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갑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보험설계사였던(1989. 6. 23.경부터 2001. 3.경까지) 피고 김○○를 통하여 2000. 5. 16.경 보험가입 금액 17,170,000원, 보험료 금 15,003,489원, 연금지급개시일 2015. 5. 16.로 한 연금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였다.

(2) 한편, 원고는 1999. 11. 29. 피고 회사에 전화청구서비스(이하 ARS 라고만 한다)를 신청하였고(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도 피고 회사와 몇 차례 보험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어 그 무렵 위 전화청구서비스를 신청하였고, 그 신청이 계속 유지

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그 신청서에는 송금지정계좌로 원고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예금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위 서비스 이용을 위한 비밀번호도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보험약관 제25조는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제1항), 계약자가 제1항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 지급금에서 서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회수하며(제2항), 회사가 약관대출이자의 납입지연 등을 이유로 약관대출대상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1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4) 또한, 피고 회사의 약관대출약정서에는 "약관대출계약이라 함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금전을 차용하는 계약인데(제1조 제1항), 약관대출원금과 이자 및 각종 제세금의 합계액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에 도달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므로 회사는 약관대출 계약 및 약관대출대상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을 약관대출원리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6조 제1항 제1호)."라고 되어 있다.

(5) 피고 회사에 ARS 서비스를 신청한 자들에게 적용되는 "전화청구서비스 이용규약"에는 "서비스는 고객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으로 하고, 거래안전 및 조회 내용 비밀보장을 위해 고객계좌의 비밀번호 및 자동응답서비스 신청시 등록한 비밀번호를 확인한 후 서비스를 제공하되(제5조), 회사는 실명확인 후 이용신청서에 적힌 내용대로 전산처리를 한 경우에는 고객을 가장한 어떠한 사고로 말미암아 고객에게 손해가 생겨도 책임을 지지 않고, 회사는 회사에 책임이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 누설됨으로써 전산기기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생겨도 책임

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한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고객이 진다(제11조)."라고 되어 있다.

나. 한편, 피고 김○○는 2001. 11. 13., 2002. 12. 4. 및 2003. 1. 8. 3차례에 걸쳐, 원고로부터 보험약관대출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위임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원고의 위 송금지정계좌인 농업협동조합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ARS 서비스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 회사의 ARS로 전화하여 자신이 원고인 것처럼 자동녹음된 음성안내에 따라 원고의 증권번호, 주민등록번호, 송금받을 계좌번호, 대출금액(2001. 11. 13.에는 금 8,000,000원, 2002. 12. 4.에는 금 2,000,000원, 2003. 1. 8.에는 금 4,600,000원)을 차례로 입력하고, 원고가 가입하고 있던 이 사건 보험금을 담보로 합계 금 14,600,000원의 약관대출을 받았는데, 피고 회사는 위 신청에 따라 원고가 ARS 서비스 신청시 지정한 송금계좌인 원고의 농업협동조합 예금계좌로 위 각 대출금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그 후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피고 회사로부터 2005. 1. 12.경 대출원리금이 이 사건 보험의 해지 환급금에 달하였으므로 그 해지 환급금으로 대출원리금을 상환함과 동시에 약관대출계약 및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 김○○에게 약관대출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이에 김○○는 원고에게 '○○생명대출원금을 9. 10.까지 꼭 상환하겠다'라는 확인서 및 2005. 9. 3.자로 '금 21,600,000원, 변제기한 2005. 9. 15., ○○생명대출변제'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피고 김○○가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미루자,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피고 김○○를 위 나.항 기재 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고, 피고 김○○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2007. 3. 23.자로 위와 같은 내용을 범죄사실로 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위 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 김○○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는 원고에게 편취금 1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6. 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9. 1.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원고는 피고 김○○를 상대로 금 2,500,000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의 ARS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피고 김○○가 원고의 피고 회사에서 재직하던 중에 원고의 비밀번호를 지득하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ARS를 이용한 약관대출을 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 회사로서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 같은 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 책임 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업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보험업법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1)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은 "보험사업자는 그 임원·직원·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사업자의 보험모집인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소속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위 조항이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일반 규정인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보험사업자가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보험모집인의 행위가 모집행위이거나, 모집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행위를 외형적으로 관찰할 때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모집인의 본래 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그 모집행위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아 보이는 행위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2004다4535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피고 김○○가 원고가 납입한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행위는 모집행위, 즉,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외형상 객관적으로도 보험모집과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모집행위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 김○○의 대출 행위가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과 관련된 행위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1) ARS에 의한 약관대출은 기계 또는 전산처리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것이 대출계약으로 적법하게 성립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대출계약시의 사정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행하여진 ARS 서비스의 등록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2005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가 스스로 ARS 서비스 신청서(을제1호증)에 자필로 서명은 하였으나, 원고가 고령이고 자신의 이름만 겨우 쓸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한데, 당시로서도 생소한 제도였던 ARS에 의한 약관대출을 예정하고 그 서비스를 신청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가 위 신청서상 성명란만을 자필로 기재하였을 뿐,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이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따라서 원고가 위 신청서에 비밀번호를 기재하기 위하여 피고 김○○ 또는 피고 회사 직원에게 이를 불러주었거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신청서상의 비밀번호가 원고의 통장 비밀번호와 일치하는 점, ⑤ 피고 회사 직원이 서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전산에 입력하여 ARS 등록 절차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그 비밀번호들이 다른 사람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점, ⑥ 피고 회사가 이 같은 비밀번호 및 개인정보 수집 절차로 개인정보가 누설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2003. 9.경부터는 소위 "핀패드" 방식(고객이 직접 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에 의한 비밀번호 입력을 의무화하고 있는 점, ⑦ 원고가 평소 피고 김○○에게 피고 회사와의 보험과 관련된 업무를 일임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로서는 피고 김○○가 ARS 서비스 신청을 권하자,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 평소 자신의 보험관련업무를 봄주던 피고 김○○를 믿고 위 서비스를 신청하기에 이르렀고, 피고 김○○

○가 시키는 대로 비밀번호(만연히 통장비밀번호를 알려줬을 것이다)와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기재토록 함으로써 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 김○○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원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약관대출금을 신청한 다음,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대출금을 인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의 개인정보가 그 수집단계에서부터 직원이나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적어도 사전 예방 시스템인 "핀패드"에 의한 비밀번호 수집 방식을 도입하였어야 함에도(당시 이 같은 방법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회사의 이 같은 과실과 원고의 위와 같은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약관대출금을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도 자신의 통장 비밀번호가 피고 김○○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면, 비록 피고 김○○가 원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약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인출할 수는 없었을 것인바, 원고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과실이 이 사건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한다.

(3) 나아가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도 금 2,500,000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특별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김○○와 연대하여 피고 김○○가 편취한 금 14,600,000원 중 금 4,380,000원($14,600,000\text{원} \times 0.3$)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6. 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9. 1.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일 _____